

일반직원인사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1997. 03. 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교에 설치하는 수원대학교 일반직원(교원 제외)인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직) ① 위원회는 총장과 각 처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5등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조직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통리한다.

③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직원의 신규채용, 승진 및 승급에 관한 사항

이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에 의거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

가. 근무 성적 평정 및 담당사무능력

나.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능력

다. 건학이념의 구현 및 본교 발전에의 기여도

라.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직원으로서의 품위 유지

2. 법령, 정관 및 본교 제 규정에 의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이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간사로 한다.

제8조(세칙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칙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규정시행 당시 본 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.